※ 번역문은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며, 기존의 한글 서식에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こちらの翻訳文は民願申請の参考用であり、提出時には既存の韓国語の書式に韓国語で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개정 2023. 12. 29.>
■雇用保険法施行規則［別紙第100号書式］＜改正2023年12月29日＞

[ ] 육아휴직 급여
[ ] 育児休業給付 신청서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申請書
[ ] 育児時短就業給付

※ 2쪽의 공지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이나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1쪽)
※2ページの告示事項と作成方法をよく読んで記入し、[ ]若しくは( )には該当する項目に「✓」をつけてください。 (全3ページ中1ページ)

접수번호 受付番号	접수일 受付日	처리기간 : 14일 処理期間：14日

1. 신청인 정보
1. 申請人情報

성명 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주소 住所 (연락처:) (連絡先：)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対象となる子の住民登録番号	출산 예정일 出産予定日

신청내용
申請内容

① 급여 신청기간 ① 給付申請期間	년 월 일 ~ 년 월 일 年 月 日 ~ 年 月 日

②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② 給付を支給する口座番号

은행명: 銀行名：	계좌번호: 口座番号：	예금주: 口座名義：

③ 대상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부(父)또는 모(母)가 과거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어 이번 육아휴직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에 해당합니까?
③ 対象となる子について申請人ではない父、又は母が過去に育児休業を利用したことがあり、今回の育児休業が父母のうちどちらかの2回目の育児休業に該当しますか？

[ ]예 [ ]아니오
[ ]はい [ ]いいえ

④ (③란을 '예'로 선택한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신청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에 해당합니까?
④ (③の欄を「はい」と回答した場合) 育児休業の開始日を基準として申請人の育児休業の対象となる子が生後18ヵ月以内に該当しますか?

[ ]예 [ ]아니오
[ ]はい [ ]いいえ

(④-1: ④란을 '예'로 선택한 경우 신청인의 배우자가 작성) 신청인의 배우자가「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3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해당 배우자에게 육아휴직 급여의 추가 지급분이 발생합니까? '예'로 선택한 경우 해당 배우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④-1：④の欄で「はい」と回答した場合、申請人の配偶者が記入) 申請人の配偶者が「雇用保険法施行令」第95条の3第1項に基づく育児休業給付特例規定が適用されると、当該配偶者に育児休業給付の追加支給分が発生しますか? 「はい」と回答した場合は当該配偶者の基本事項及び口座番号を記入してください。

[ ]예 [ ]아니오

[ ]はい [ ]いいえ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配偶者の氏名： 住民登録番号：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銀行名： 口座番号： 口座名義：)

(④-2: ④란을 '아니오'로 선택한 경우) 신청인이 신청하려는 육아휴직 급여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④-2：④の欄で「いいえ」と回答した場合) 申請人が申請したい育児休業給付の種類を選択します。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 ]「雇用保険法施行令」第95条に基づく育児休業給付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 ]「雇用保険法施行令」第95条の2第1項に基づく育児休業給付特例

※ 2022년 1월 1일 현재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 특례의 적용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로서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022年1月1日時点で被保険者の育児休業給付特例の適用期間が1ヵ月以上残っている場合で、2022年1月1日以降の育児休業期間に対して育児休業給付特例の適用を希望する場合に選択できます。

⑤ 신청인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입니까?

⑤ 申請人は「ひとり親家族支援法」第4条第1号各目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母又は父ですか？

[ ]예 [ ]아니오

[ ]はい [ ]いいえ

3. 확인사항

3. 確認事項

⑥ 급여 신청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⑥ 給付申請期間中に事業主から給付を受けたことはありますか?

[ ]예 (급여를 받은 기간: 부터 까지, 금액: 원), [ ]아니오

[ ]はい (給付を受けた期間： から まで、金額： ウォン) [ ]いいえ

⑦ 급여 신청기간 중에 조기 복직 또는 퇴사했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을 통한 사업소득 활동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⑦ 給付申請期間中に早期復職若しくは退社したか、又は他の事業場から給与所得若しくは自営業通じて事業所得を得ていた事実はありますか? [ ]はい [ ]いいえ

※ '예'를 선택한 경우 아래 난에서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고,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 「はい」と回答した場合は下記の欄の該当する項目に✓をつけて当該内容を記入してください。

▪ ( ) 조기복직 조기복직일:

▪ ( ) 早期復職 早期復職日：

( ) 퇴사 퇴사일:

( ) 退社 退社日：

▪ ( ) 근로소득 소득활동기간: , 총 소득액: 원

▪ ( ) 給与所得 所得活動期間： 、総所得額： ウォン

( ) 사업소득　　소득활동기간:　　, 총 소득액:　　원

( ) 事業所得　　所得活動期間：　　、総所得額：　　ウォン

▪ 근로소득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 주　　시간

▪ 給与所得の場合、週当たりの労働時間：週　　時間

⑧ 배우자가 대상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부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⑧ 配偶者が対象となる子に対して育児休業又は育児時短就業給付を同時に取得した事実はありますか？

[ ]예 (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 :　　부터　　까지),　[ ]아니오

[ ]はい（求職又は育児時短就業期間：　　から　　まで）、　[ ]いいえ

⑨ 급여 신청기간 연장 사유(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난 후 12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⑨ 給付申請期間の延長理由（育児休業又は育児時短就業期間が終わってから12ヵ月が経過した後で申請する場合のみ）

[　　]

4. 서명 및 날인

4. 署名及び捺印

「고용보험법」 제70조 또는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雇用保険法」第70条又は第73条の2及び同法施行規則第116条第1項に基づき、上記のとおり申請します。

년　　월　　일

年　　月　　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申請人　　(署名又は印)

배우자　　(서명 또는 인)

配偶者　　(署名又は印)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地方雇用労働庁（支庁）長　殿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지사항
告示事項

1.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雇用保険から支給される育児休業又は育児時短就業給付は育児休業又は育児時短就業の開始日以降1ヵ月から終了日以降12ヵ月以内に申請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ただし、自然災害等の理由で育児休業又は育児時短就業給付を申請できなかった者は、その理由がなくなってから30日以内に申請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2.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25%)는 사후지급금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제1항제1호, 제95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育児休業給付の一部（25%）は後払いで支給され、育児休業終了後に当該事業場に復帰して6ヵ月以上継続して勤務した場合に支給されます（「雇用保険法施行令」第95条の2第1項第1号、第95条の3第1項第1号及び同条第3項第1号に基づく育児休業給付はその限りではありません）。

※ 다만,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ただし、育児休業終了後に当該事業場に復職して労働者の非自発的な理由によって6ヵ月継続して勤務できない場合も後払いで支給されます。

작성방법
作成方法

1.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1. 신청인 정보란에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 労働者が満8歳以下又は小学校2年生以下の子の養育のために取得した育児休業に対して育児休業給付を申請するか、又は育児時短就業給付を申請する場合は1. 申請人情報の欄に対象となる子の住民登録番号を記入してください。

2.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1. 신청인 정보란에 출산 예정일(신청인이 육아휴직 신청 시 육아휴직 신청서에 적은 출산 예정일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2. 妊娠している女性労働者が母性保護のために取得した育児休業について育児休業給付を申請する場合は1. 申請人情報の欄に出産予定日（申請人が育児休業申請時、育児休業申請書に記入した出産予定日を指す）を記入してください。

3. ①란에는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총 휴직기간 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기간을 적습니다.

3. ①の欄には事業主から与えられた総休業期間又は労働時間短縮期間中の受給したい期間を記入してください。

4. ②란에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4. ②の欄には必ず申請人本人の口座番号を記入してください。

5. ③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5. ③の欄には「雇用保険法施行令」第95条の2第1項に基づき、同じ子に対して父母が順次に育児休業を取得する場合で、2回目の育児休業を取得した者に該当するかどうかを記入してください。

6. ④란, ④-1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하거나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6. ④、④-1の欄には「雇用保険法施行令」第95条の3第1項に基づき、被保険者である妊娠している女性労働者が育児休業をする場合はその被保険者である配偶者が子の出生後18ヵ月になるまで育児休業を取得するか、若しくは同じ子に対して出生後18ヵ月になるまで被保険者である父母全員が育児休業を取得する場合に記入してください。

7. ④-1란의 “추가 지급분”이란 신청인의 배우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육아휴직 급여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종전에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7. ④-1の欄の「追加支給分」とは申請人の配偶者が「雇用保険法施行令」第95条の3第1項に基づき支給されるべき育児休業給付から同法施行令第95条第1項に基づき従前に支給された育児休業給付を差し引いた金額を指します。

8. ⑤란은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8. ⑤の欄には申請人が次の各目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母又は父であるかどうかを記入してください。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

イ. 配偶者と死別若しくは離婚又は配偶者から遺棄された者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ロ. 精神若しくは身体の障がいによって長期に渡って労働することができない配偶者を持つ者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ハ. 矯正施設・治療監護施設に収容されている配偶者又は兵役に服している配偶者を持つ者

라.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ニ. 未婚[事実婚関係にある者は除く]

마.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ホ. 配偶者の生死が不明な者

바.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사람

ヘ. 配偶者又は配偶者の家族との不仲等で別居をしている者

9. ⑥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은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 및 금액을 적습니다.

9. ⑥の欄には育児休業又は育児時短就業給付の申請期間中に事業主から給付の一部又は全部を支給された場合（支給予定である場合を含む）、その期間及び金額を記入してください。

10. ⑦란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 중 ⓐ신고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보다 조기에 복직 또는 퇴사했거나, ⓑ해당 기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급여신청기간 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소득 활동을 했던 기간과 소득금액을 적되, 근로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주당 근로시간까지 적습니다.

10. ⑦の欄には育児休業又は育児時短就業給付の申請期間中にⓐ申告した育児休業又は育児時短就業の期間より早期に復職若しくは退職したか、又はⓑ当該期間に他の事業場で給与所得又は自営業を通じた所得がある場合のみ記入してください。給付の申請期間中に給与所得及び事業所得があった場合は当該所得活動を行った期間と所得金額を記入し、給与所得があった場合は週当たりの労働時間も記入してください。

11. ⑧란은 신청인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11. ⑧の欄には申請人が育児休業又は育児時短就業の対象となった子に対して配偶者も育児休業又は育児時短就業を取得した場合のみ記入してください。

12. ⑥란, ⑦란, ⑧란 및 ⑨란을 사실대로 적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수급한 급여액을 반환해야 하고,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⑥の欄、⑦の欄、⑧の欄及び⑨の欄を虚偽の内容を記入すると不正受給とみなされて受給した給付額を返金しなければならず、その給付額の2倍にあたる金額を徴収される等の不利益を受ける場合があります。

13. ⑨란에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의 경우 등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습니다.

13. ⑨の欄には自然災害、申請人本人・配偶者又はその直系尊属・卑属の疾病・怪我、「兵役法」に基づく義務兵役、犯罪の疑いによる拘束又は刑の執行の場合等、育児休業若しくは育児時短就業給付を申請できなかった理由を記入してください。

14. 배우자 서명란(1쪽 및 3쪽)은 신청내용 중 ④란을 ‘예’로 선택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14. 配偶者の氏名欄（1ページ及び3ページ）には申請内容のうち④の欄に「はい」と回答した場合のみ記入してください。

신청인 첨부 서류 申請人の添付書類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育児休業給付の申請時>** 1.「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1. 「雇用保険法施行規則」第118条に基づく育児休業確認書1部（初回のみ提出する）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2. 通常の賃金を確認できる証明資料（賃金台帳、勤労契約書等）の写し1部 3.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3. 育児休業期間中に事業主から金品を支給された場合、それを確認できる資料の写し1部 4.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育児休業の申請当時、妊娠していたことを証明できる書類（妊娠している女性労働者の育児休業に対して育児休業給付の支給を希望する場合のみ）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5. 「雇用保険法施行令」第95条の2第1項に基づき育児休業給付を申請する場合、同じ子に対して申請人でない父又は母が育児休業を取得した事実を確認できる証明資料の写し1部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는 부모로 봅니다. 6. 「雇用保険法施行令」第95条の3第3項に基づき育児休業給付を申請する場合、同じ子に対して申請人ではない父母が育児休業をした事実を確認できる証明資料の写し1部この場合、妊娠している女性労働者が妊娠を理由に育児休業を取得する場合は、妊娠している胎児を子とみなし、妊娠している女性労働者とその配偶者は父母とみなします。 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7. 「雇用保険法施行令」第95条の3第3項に基づき育児休業給付を申請する場合は、「ひとり親家族支援法」第4条第1号各目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母又は父であることを確認できる証明資料の写し1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시>** **<育児時短就業給付の申請時>**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1. 「雇用保険法施行規則」第118条に基づく育児時短就業確認書1部（初回のみ提出する）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을 말합니다) 사본 1부 2. 育児時短就業前・後の所定労働時間、通常の賃金等の労働条件を確認できる証明資料（賃金台帳、労働契約書等を指す）の写し1部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3. 育児時短就業期間中に事業主から支給された金品を確認できる資料（短縮された所定労働時を超えた労働を理由に支給された金品は別途確認できる必要がある）の写し1部	수수료 없음 手数料なし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担当公務員確認事項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住民登録票謄本、家族関係証明書、ひとり親家族証明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行政情報の共同利用に関する同意書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私は、本件の業務処理に関して担当公務員が「電子政府法」第36条第1項に基づく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じて、上記の担当公務員確認事項を確認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但し、同意しない場合は申請人が関連書類を自ら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신청인 (서명 또는 인)
申請人 (署名又は印)
배우자 (서명 또는 인)
配偶者 (署名又は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個人情報の取得及び利用に関する同意書（選択）

본인은 고용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私は、雇用保険制度の案内及び関連制度の改善に必要な意見調査等のために、郵送又は携帯電話等で関連情報等を受信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①個人情報の取得及び利用目的：関連制度の広報資料の提供及び制度の改善に必要な意見調査等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②取得する個人情報の項目：申請人の氏名、住所及び携帯電話番号等の連絡先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신고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3년

③個人情報の取得及び利用期間：申告した事業場で育児休業（育児時短就業）終了後3年間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고용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④同意を拒否する権利等の案内：申請人は、個人情報の取得及び利用に対して拒否することができ、その場合、公団が提供する雇用保険制度の案内及び関連情報等の提供を受けられなくなります。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上記のとおり、個人情報を取得・利用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か？ [ ] 同意する [ ] 同意しな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申請人 (署名又は印)
배우자 (서명 또는 인)
配偶者 (署名又は印)

처리절차
処理の流れ

사업주 事業主	신청인 申請人	처리기관 処理機関 지방고용노동관서 地方雇用労働官署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작성 育児休業（育児時短就業）確認書の作成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작성 育児休業（育児時短就業）給付申請書の作成	제출 提出 → 접수 受付 (고용센터) (雇用センター) ▼ 확인・검토 確認・検討 (고용센터) (雇用センター) ▼ 결재 決裁 (청장・지청장) (庁長・支庁長) ▼ 지급 支払 ← 전산입력 システム入力 (고용센터) (雇用センター)